

「원격수업 운영 지침」 신규조문대비표

2026. 3. 9. 개정 판 (시행 2026. 3. 1.) → 2026. 5. 18. 개정 판 (시행 2026. 6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62/compare?from=1734&to=1752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8:11:4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)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2. 개발비는 제작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급한다. 3.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,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.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%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2. K-MOOC,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3. K-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,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, 최대 3년으로 제한 한다.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·보수를지원한다.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(외부)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.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.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, 저작도구의 제공, 녹화시설(이러닝 녹화 강의실, 스튜디오)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.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 <전면개정 2025-10-13>	제18조(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)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은 <u>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u> <개정 2026-05-18> 1.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<개정 2026-05-18> 2. 개발비는 제작비와 <u>지원비</u>로 나누어 지급한다. <개정 2026-05-18> 3.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,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. <개정 2026-05-18>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<u>지원비</u>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6-05-18> 1.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%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6-05-18> 2. K-MOOC,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6-05-18> 3. <삭제 2026-05-18>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·보수를지원한다.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(외부)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.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.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, 저작도구의 제공, 녹화시설(이러닝 녹화 강의실, 스튜디오)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.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 <전면개정 2025-10-13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원격수업 운영 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)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.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2. 개발비는 제작비와 지원비로 나누어 지급한다.

3.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,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.

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%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K-MOOC,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3.

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·보수를지원한다.

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(외부)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.

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, 저작도구의 제공, 녹화시설(이러닝 녹화 강의실, 스튜디오)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.

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